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54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김병욱·고용진·김예지

김종민 • 민병덕 • 박성준

서동용・송재호・양향자

이상헌 • 이성만 • 이원욱

정성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 교제, 사례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접대에 지출한 접 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 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35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234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한다.

제75조의5제2항제1호 중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한다.

제76조의14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제25조(대외활동비의 손금불산입)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 ① ----대외활동비----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 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 ----대외활동비----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대외활동비-----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 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 대외활동비-----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 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가.·나. (생 략)
-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 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 는 <u>접대비</u>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 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 는 <u>접대비</u>
-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 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 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u>접대비</u>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1
<u>대외활동비</u>
가.·나. (현행과 같음)
2
대외활동비
3
대외활동비
4
<u>대외활동비</u>
3
대외활동비
4

지출한 <u>접대비(제2항에</u>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 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 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 ⑤ (생략)
- ⑥ <u>접대비</u>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 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5조제2항에 따른 <u>접대비</u> 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 2. (생략)
 - ③ (생 략)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u>대외활동비</u>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u>대외활동비</u>
	<u>.</u>
제	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1 <u>대외활</u>
	<u> </u>
	2. (현행과 같음)
الد	③ (현행과 같음) 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 1	소득) ①
	エコ/ ①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
으로	하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가. (생 략)
 - 나. 기부금과 <u>접대비</u>의 손금 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 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u>접</u> 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 입
-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가. (생 략)
 - 나. <u>접대비</u>의 조정: 다른 연 결법인에 지급한 <u>접대비</u>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 라. (생 략)
- 4. (생략)
- ②・③ (생 략)

<u>,</u>
1. (현행과 같음)
,
2
가. (현행과 같음)
나대외활동비
대
외활동비
3
가. (현행과 같음)
나. <u>대외활동비</u>
대외활동비
<u>,, , </u>
다.•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